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매뉴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제3호에 따라 당사의 내부통제기준 중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에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주요 정책

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 (내부통제기준 제40조)

- ① 고객의 이익은 회사와 회사의 주주 및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②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되어야 한다.
- ③ 모든 고객의 이익은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나) 이해상충의 관리 (내부통제기준 제42조)

- ① 임직원은 회사와 고객간 또는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이해상충 해소를 담당하는 부서장 등과 사전에 협의하여 고객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고객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상충 발생이 우려되는 종목, 회사명 등을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목록으로 등재·관리하여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기준

가) 미공개 중요정보의 식별기준 (내부통제기준 제46조)

- ①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②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 ③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④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 ⑤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⑥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 ⑦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 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 ⑧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 ⑨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 ⑩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 ⑪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 ⑫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나) 정보교류차단 대상에서 제외한 정보 (내부통제기준 제46조)

- ①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제54조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담당 임원 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 ⑥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 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⑦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⑧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3.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의 설정 및 부문별 정보차단 대상정보

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부통제기준 제47조)

- ① 집합투자재산 운용부문(투자운용본부)
- ② 고유재산 운용부문(경영관리본부)

나)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 (내부통제기준 제47조)

- ①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②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겸영·부수 업무
- ③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 ④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4. 거래주의·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내부통제기준 제55조)

- 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다)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 라)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5.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및 대응방안 (내부통제기준 제56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에 나누기로 하며, 각 유형에 따른 대응방안은 각 호의 각 목으로 한다.

- 가) 회사 또는 회사의 집합투자기구가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와 거래하는 경

우

-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에게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② 이해상충 가능성 및 법령위반 가능성 검토 후,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에 대한 해소방법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음.

나) 회사 또는 회사의 집합투자기구가 회사가 운용하는 투자기구의 피투자자와 거래하는 경우

-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에게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② 이해상충 가능성 및 법령위반 가능성 검토 후,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에 대한 해소방법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음.

다)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정보를 이용하여 회사의 고유계정으로 먼저 매매하는 행위

- ① 집합투자기구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함.
- ②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더라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정보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일 경우 고유계정으로 매매행위를 할 수 없음.

라) 회사의 판단에 의할 때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래의 경우

- ①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에게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② 이해상충 가능성 및 법령위반 가능성 검토 후,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에 대한 해소방법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음.